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761
- 발 의 자 : 김원태 의원 외 14명
- 발 의 일 : 2024년 4월 3일
- 회 부 일 : 2024년 4월 8일

2. 제안이유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 처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해야 함에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 또한,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위원들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수임기관 규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기능을 먼저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 준수(안 제2조)

- 나. 위원의 윤리문제 발생 시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5조)
- 다. 현실과 맞지 않는 수임기관 규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조문 삭제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4.4.12. ~ 4.16.)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 처리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과 현행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해야 함에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는 등) 있어 이를 바로잡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청렴성을 강화하며, 수임기관 규정 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양,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1)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2)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에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치법규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음(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353-354면 참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윤리문제 발생시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근거(안 제6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9조)하며,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안 제12조) 규정 등을 신설하고, 재산등록 현황 보고, 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자료의 제출, 등록의무자·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징계의결요청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은 삭제하려는 것임.

〈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기능)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함(제1항) - 위원회의 관할을 규정함(제2항)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함(제2항)
제4조(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제1항) -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함(제2항).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를 규정함
제6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함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함(제1항) -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제2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됨(제1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항) -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제3항) - 위원회의 심사의결 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제4항)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직자윤리제도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음(제5항)
제9조(분과위원회)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 설치, 각 분과위원회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1항) - 분과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제2항) -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회 회의 전에 개최하여 위원 간 안건의 사전검토 등으로 전체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도모함을 규정함(제3항)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 두는 것을 규정함(제1항) - 위원회 간사는 시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함(제2항)
제11조(수당)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함을 규정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
제13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헌법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현행 제3조)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해야 함에도 구성(현행 제2조)·운영에 관한 사항을 먼저 규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바, 전체적으로 조례의 체계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설치·소속·기능을 먼저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의 수·자격·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격사유,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존속기한 등의 순으로 규정함(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년 8월, 217면 참조).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개요 〉

□ 운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개요

○ 구성인원 : 13명

- 판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9명, 시의원 2명, 서울시 공무원 2명

○ 위원임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전문가)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
-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재임 기간
- (공무원) 감사위원회 등 임명시 직위 재직 기간

○ 주요기능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재산공개 공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위반 심사
- 서울시 관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심사, 업무취급 승인 등

○ 소위원회 : 전체회의 개최 전 5개 분과 소위원회 운영으로 업무효율화

※ 출처 : 행정자치위원회 요구번호 642, 감사위원회 2024년 4월 3일 제출자료 참조.

〈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 〉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개최 (안건)	6 (40)	5 (40)	5 (35)	7 (46)	8 (35)

※ 출처 : 2024년 4월 12일 감사위원회 제출자료 참조.

〈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및 처분현황 〉

(단위: 건)

구분	심사기관	심사대상	처분결과				실무종결 (이하)	비고
			계	징계· 과태료	경고	보완 명령		
2023년	서울시	2,628	627	25	107	495	2,001	
	소방	827	112	5	29	78	715	
2022년	서울시	2,539	537	20	77	440	2,002	
	소방	741	91	4	17	70	650	
2021년	서울시	1,319	236	7	63	166	1,083	
	소방	1,324	200	4	82	114	1,124	

※ 출처 : 2024년 4월 12일 감사위원회 제출자료 참조.

〈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

(단위: 건)

구 분	합계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현황			취업승인 심사 현황		
		소계	취업가능	취업제한	소계	취업승인	취업불승인
2023년	71	70	70	-	1	-	1
2022년	89	84	82	2	5	-	5
2021년	67	67	65	2	-	-	-

※ 출처 : 2024년 4월 12일 감사위원회 제출자료 참조.

〈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과태료 부과 통보 현황 〉

(단위: 명)

구 분	합계	서울시	소방	자치구	공직유관단체
2023년	60	4	47	9	-
2022년	63	10	44	7	2
2021년	40	-	38	2	-

※ 출처 : 2024년 4월 12일 감사위원회 제출자료 참조.

나. 세부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목적 규정”에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조례가 위임 조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위법령 위임 범위에 위배 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상위법령 위임을 받아 정하는 조례라면 위임

조례임을 목적 규정에 명확하게 표시해 주어야 하고(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8., 87면 참조),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입법의 목적과 취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하여야 함(법제처, 『2022년 법령입안심사기준』, 2021.12., 54면 참조).

○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1항 제3호에서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를 위원회 심사·의결사항으로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직자윤리법」¹⁾ 일부개정(2020년 12월 22일)에 따른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하겠음.

※ 법 제14조의5제11항의 내용은 재산공개대상자가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1) 주식 관련 의무(매각,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거나 2)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① 경고 및 시정조치, ② 과태료 부과, ③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조치임.

- 다만, 「공직자윤리법」의 동 조항이 신설되어 2021년 6월 23일 시행되었음에도 감사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3년여 동안 개정하지 않아 동 조례가 상위법령 규정 사항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례의 법적 정합성 및 법체계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되도록 하는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1) 법률 제17754호, 시행 2021.6.23.

현 행	전 부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2.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그 밖의 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p>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소속 4급이하 공무원(시의회를 포함한다)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자치구의회 의원 및 자치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p>< 신 설 ></p> <p>< 신 설 ></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p>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소속 소방정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관·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시 자치구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신 설 >

< 신 설 >

6. 자치구의회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7. 자치구의회 의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원 구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를 전부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²⁾ 따른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도 적용되므로 재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하겠음.

※ 현행 위원 구성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게 남성 7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장이 9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현행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를 전부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승인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민간위원 위촉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의로 위원 선정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바,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문의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현행	전부개정안
<p>제2조(구성) ① <u>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되, <u>성별을 고려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u>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위촉한다.</u></p> <p>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인 의원(이하 ‘<u>시의원</u>’이라 한다) 2명과 <u>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위원으로 한다.</u></p> <p>③ <u>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u></p>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u>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u></p> <p>2. 4명의 위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인 의원(이하 “<u>시의원</u>”이라 한다) 2명과 <u>시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속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u></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장으로 한다.</u></p> <p>< 제9조제1항으로 이동 ></p>

- 안 제4조는 현행 제4조제3항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보궐위원 임기 단서를 삭제하여, 새로운 위촉 위원의 임기를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가 아닌 2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규정은 보궐위원을 어렵게 위촉하고도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의 삭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겠음.

현행	전부개정안
<p>제4조(임기) ① <u>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u>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u></p> <p>③ <u>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4조(임기) ① <u>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② 시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기간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u>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u></p> <p>< 삭제 ></p>

※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도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하고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단서 규정은 없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7조(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황 및 임기 〉

연번	위원명	임기시작일	임기종료일	위촉기간	주요경력
1	000	'20.1.16	'22.8.18	2년 7개월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2	000	'20.2.24	'24.3.10	4년 (연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3	000	'20.2.24	'24.3.10	4년 (연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서울시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

연번	위원명	임기시작일	임기종료일	위촉기간	주요경력
4	000	'20.2.24	'24.3.10	4년 (연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5	000	'20.9.17	'22.3.24	1년 6개월	서울시의회 행자위 위원장
6	000	'20.9.17	'22.4.13	1년 7개월	서울시의회 행자위 위원
7	000	'21.7.8	'25.7.7	4년 (연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8	000	'21.7.8	'25.7.7	4년 (연임)	헌법재판소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3부장
9	000	'21.8.9	'23.12.31	2년 5개월	서울시 감사위원장
10	000	'22.5.6	'23.3.23	11개월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1	000	'22.5.6	'24.3.10	1년 10개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12	000	'22.5.6	'24.5.5	2년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13	000	'22.5.6	'24.5.5	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14	000	'22.9.8	재임기간	-	서울시의회 행자위 위원장
15	000	'22.9.8	'23.11.9	-	서울시의회 행자위 위원
16	000	'22.9.8	'23.12.31	1년 4개월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17	000	'23.5.10	'24.3.10	10개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18	000	'23.12.19	재임기간	-	서울시의회 행자위 위원
19	000	'24.1.1	재임기간	-	서울시 감사위원장
20	000	'24.1.1	재임기간	-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21	000	'24.3.11	'26.3.10	2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2	000	'24.3.11	'26.3.10	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한국보건원 데이터 심의위원
23	000	'24.3.11	'26.3.10	2년	서울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변호사
24	000	'24.3.11	'26.3.10	2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	000	'24.3.11	'26.3.10	2년	국무조정실 평가위원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장

*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2명 및 시의원 2명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함

※ 출처 : 행정자치위원회 요구번호 642, 감사위원회 2024년 4월 3일 제출자료 참조.

3) 위원의 제척·회피, 해임·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의 제척·회피, 해임·해촉³⁾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 위원들의 공정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임.

- 제척: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의 존재 여부 또는 주장 여부를 불문하고 제척결정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됨.
- 회피: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임.

- 다만,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도 13명(민간위원 9명, 당연직 인사혁신처장, 정부 소속 공무원 3명,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에서는 제5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에도 제척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6조는 시장이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은 원칙적으로 주어-일시-상대방-목적-행위의 순서로 기재해야 하나, 안 제6조는 시장을 주어로 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을 “해촉되다”가 아니라 “해촉하다”로 표현해야 하는바, 안 제6조에서 “해임 및 해촉된다.”를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개정안과 같음 >

3) 공무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으로 표현하고, 민간위원은 “위촉”에 상응하여 “해촉”으로 표현함.

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개정안과 같음 >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개정안과 같음 >

4) 위원회의 회의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의 소집권자 및 절차, 회의의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본위원회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연 1회는 비대면으로 서면회의를 하고 있으나, 본 전부 개정조례안에서는 출석 회의 원칙의 예외인 서면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에서는 서면회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임.

※ 위원회의 서면결의를 인정하려면 이는 회의 방식의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함. 이 경우 서면결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위원회의 운영이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그 사유는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함(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8., 230면 참조).

< 202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구분	일시	주요 내용	참석 인원	대면 또는 비대면	수당 지급 현황
2022년	3.24.	-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등	7명	비대면 (서면)	500천원
	5.26.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확정 등	9명	대면	2,200천원
	7.7.	-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	6명	대면	1,700천원
	9.22	-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 퇴직자 취업승인 신청 심사 등	8명	대면	2,350천원

	11.24.	- 재산등록사항 심사 -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등	10명	대면	2,500천원
2023년	3.23.	- 재산공개자 재산심사 확정 - 주식매각 신고 지연 처분 심사 등	10명	대면	1,900천원
	5.25.	-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확정 - 퇴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7명	대면	2,100천원
	7.6.	-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등	11명	대면	2,400천원
	9.21.	- 주식 매각 등 의무이행 지연 심사 -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등	11명	대면	2,800천원
	10.16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10명	비대면 (서면)	800천원
	11.23.	-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 재산변동사항 신고면제 심사 등	9명	대면	2,600천원
2024년	1.22.	- 재산공개자 등록사항 심사 - 퇴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10명	비대면 (서면)	700천원

※ 출처 : 행정자치위원회 요구번호 642, 감사위원회 2024년 4월 3일 제출자료 참조.

- 다만, 서면의결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경우로 한정하여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 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 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또한, 안 제8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심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이 회의 비공개 근거(「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를4)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으나, 상위법령은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단 비공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행	전부개정안	수정의견
<p>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p>	<p>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 신설 ></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p>	<p>< 개정안과 같음 ></p> <p>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p> <p>1. 안건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p> <p>③ ----- ----- ----- -----</p>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 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 신 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삭 제 >

③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

< 개정안과 같음 >

< 개정안과 같음 >

④ -----

-----.

⑤ 위원회의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

	<u>원 명단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u>	<u>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u>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u>공직 윤리제도</u>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u>공직 자윤리제도</u> 관련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 ----- -----.

5) 재산등록현황 보고 등 삭제(현행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현행 조례 중 제7조(재산등록현황 보고), 제8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10조(등록의무자·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제11조(진술청취 등), 제12조(수입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제13조(수입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14조(징계의결요청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은 규정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8조부터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를 다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며, 법령의 내용이 개정·폐지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 발생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상위 법령을 그대로 인용한 조문의 삭제는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한 것으로 보여 입법경제상 의미있다고 하겠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현 행 조 례
제8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	제8조(재산등록서류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무자·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2조(진술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14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필요한 재산등록서류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를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의무자·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출석일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진술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결과 보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결요청 등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 분과위원회 및 연차보고서 제출 규정 신설(안 제9조 및 제12조)

- 법 제9조제5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도 사전에 분과위원회 개최(안건의 사전 검토 등)를 통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것임을 안 제9조제3항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하겠음.
- 다만, 현행 위원회는 전문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 취지에 맞게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다음으로,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가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보고서 등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법률은 의회에만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차보고서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제출되지 않고 본회의에만 제출하고 있는바, 소관 상임위원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및 보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현 행	전 부 개 정 안
<p><u>< 신 설 ></u></p> <p>제1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간사는 <u>서울특별시</u>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p> <p>제16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u>그 밖에 필요한 경비</u>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u>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p>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체 위원회 회의 전에 개최하여 위원 간 안건의 사전검토 등으로 전체 위원회 업무의 효율을 도모한다.</p> <p>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p> <p>② 위원회의 간사는 <u>시</u> 공직윤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p> <p>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u>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u>」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p>

< 신 설 >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그 밖에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해임·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사·의결의 객관성 확보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임기관 규정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와 법체계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위원의 제척규정(안 제5조제1항)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직급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제척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 서면회의와 전문위원 규정 신설의 필요성, 위원회 명단까지 비공개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